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·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

3. 주요내용

중소기업 및 중·소상공인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(안 제20조제3항제3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(별첨)

나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예 산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(2015. 2. 3. ~ 2. 23) 결과 : 의견없음

3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4) 부패/인권/성별 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중소기업 및 중·소상공인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중소기업육성기금) ① · ② (생 략)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3. (생 략)</p>	<p>제20조(중소기업육성기금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중소기업 및 중 · 소상공인의 육성 ·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 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